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7.

발 의 자 : 한정애 · 조인철 · 이병진
임오경 · 이학영 · 박지원
허영 · 이수진 · 김동아
유동수 · 김영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형사소송법」은 재판확정기록 및 판결서 등의 열람과 복사에 있어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. 특히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이들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재판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이 형사재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.

이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재판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

하고, 재판확정기록 열람·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함.

또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 열람·복사 시 비용을 면제하고,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며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42조 등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피고인 가운데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로 된 재판서를 제공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

제59조의2제1항 중 “권리구제·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”를 “재판이”로 한다.

제59조의3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대법원규칙으로”를 “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법원규칙으로”로 한다.

- ⑥ 법원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⑦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가 인터넷, 그 밖의 전산

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42條(裁判의 宣告, 告知의 方式) (생략) <신설>	第42條(裁判의 宣告, 告知의 方式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피고인 가운데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접자로 된 재판서를 제공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</u>
제59조의2(재판확정기록의 열람·등사) ① 누구든지 <u>권리구제·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</u>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~ ⑦ (생략)	제59조의2(재판확정기록의 열람·등사) ① -----<u>재판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59조의3(확정 판결서등의 열람·복사) ① ~ ⑤ (생략) <신설>	제59조의3(확정 판결서등의 열람·복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법원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</u>

<u><신 설></u>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,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법원규칙</u>으로 정한다.	<u>는 국민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</u> ⑦ <u>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가 인터넷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한다.</u> ⑧ ----- ----- ----- -----<u>국민의 기본권</u> <u>및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</u> <u>방향으로 대법원규칙으로</u>-----.
---	---